산학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주)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실습생(이하 '을'이라 한다) 과 _____ 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산학실습수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학실습 기간 및 장소)

① 산학실습 기간은 아래 두 기간 중 '을'이 선택한다.

[1차] 2015. 07. 06 ~ 2015. 07. 31 [2차] 2015. 08. 03 ~ 2015. 08. 31

② 산학실습은 '갑'의 호텔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갑의 의무)

'갑'은 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학실습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산학실습 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③ 산학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④ 산학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본인 소속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5조(산학실습 기준시간)

산학실습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1주간에 40시간(주 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산학실습 수당)

산학실습 수당(실습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으로 월 이십오만 원정으로 하되, '을'이 실습기간 중 중도하차 시 '갑'의 내규에 따라 일부 지급한다.

제7조(산학실습의 평가)

'갑'은 '을'의 산학실습 및 출근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을' 또는 '병'의 산학실습기관성적표, 산학실습 확인서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제8조(재해 책임여부)

산학실습기간 동안 '을'이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갑'은 안전교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 '병'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